# 2020년 충남학사 대전관 1학기 입사부담금 반환 안내

코로나 19로 인한 대전권 대학의 대면수업일(등교일) 재조정 등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충남학사 대전관 1학기 학사생 입사부담금 반환을 안내하니 해당 학사생은 안내에 따라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미입실자 중 1학기 비대면수업(사이버, 온라인)으로 인한 퇴사희망자

가. **5. 8.(금) 12:00까지 학과장 날인의 확인서 첨부해 홈페이지에서 퇴사신청**

나. 기 납부한 입사부담금 전액 반환(계속재사생 65만원, 신입사생 71만원)

다. 규정에 의거 중도퇴사(학기 중)자로 2학기 입사할 수 없음

## 2. 1학기 비대면수업(사이버, 온라인)으로 인한 일시퇴실신청자

### (1) 전체 비대면수업으로 미입실자 중 2학기 계속재사 희망 시

가. **학과장 날인의 확인서 첨부해 홈페이지에서 일시퇴실 신청(5. 8.까지)**

나. **1학기 납부 부담금은 2학기 부담금으로 전액 이월**

다. 2학기 개원 전 계속재사 취소·반환 신청 시 납부 부담금 전액 반환

### (2) 전체 비대면수업 중 추후에 대면수업 확정 시 중도 입실희망자

가. 학과장 날인의 확인서 첨부해 홈페이지에서 일시퇴실 신청

나. 일시퇴실기간의 해당하는 부담금의 50% 반환

다. 2학기 입사부담금 납부 시 2개월분(3, 4월) 감면 조치

라. 일시퇴실기간 종료 후 규정에 의거 부담금 반환(기간 중 임의입실 시 종료처리)

마. 학사일정에 따라 일시퇴실-입실-일시퇴실이 반복될 경우 규정에 의거 반환

## 3. 1학기 지정입사일(5.5.) 이후 퇴사 및 일시퇴실신청자

### (1) 1학기 지정입사일(5.5.) 이후 퇴사신청자

가. 학기 중 퇴사자로 당월분(5월) 제외한 잔여월 부담금의 70% 반환

나. 미운영기간(3, 4월) 부담금 중 입사비(6만원) 제외한 부담금 전액 반환

### (2) 1학기 지정입사일(5. 5.) 이후 입실자 중 일시퇴실신청자

가. 교생실습, 실기실습 등으로 7일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(확인서) 첨부해 홈페이지에서 일시퇴실신청

나. 일시퇴실기간 종료 후 규정에 의거 부담금 반환

### (3) 1학기 지정입사일(5.5.) 이후 지연 입실자

가. 지정입사일 기준으로 개인사정으로 늦게 입실할 경우 미입실 기간에 대한 부담금 반환은 없음

나. 입실이 늦어질 경우(7일 이상) 반드시 일시퇴실신청을 하기 바라며, 미 신청 시 일반퇴실로 처리해 반환금 없음

## 4. 1학기 미 운영기간(3월, 4월)의 부담금 반환 처리(예정)

### (1) 1학기 이용 후 퇴사 시(1학기 종료 6.30., 하계방학 7.31.)

가. 입사비 제외한 미 운영기간 부담금 전액 반환

나. 퇴사 시 규정에 의거 2학기 입사할 수 없음

### (2) 2학기 계속재사 희망자

가. 2학기 계속재사 시 2학기 부담금 감면 조치

나. 반환 또는 2학기 부담금액 감면 조치 중 선택 가능

2020. 5. 7.

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
Chungcheongnam-d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